

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!

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선배 ·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□ 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최민규 의원입니다.

지금부터 「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

- 「중소기업 창업지원법」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신산업 창업, 재창업, 청년창업기업, 중장년창업기업 등 창업지원 관련 대상의 정의를 신설하고, 창업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.

□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,

- 재창업, 신산업창업, 청년창업기업 및 중장년창업기업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, 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 창업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화 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 등을 명시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-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